

【 4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0. 1.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의 한시정원 승인 및 읍·면의 기존 상수도 관리 인력을 상수도 사업소로 이체하는등 국민관광지와 문예회관을 통합 관리하는 문화관광사업소 설치에 따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가. 군 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272”명에서 “271”명으로 조정(안제2조 제1호)
- 나.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 (안제2조 제2호)
- 다. 사업소에 두는 정원을 “34”명에서 “58”명으로 증원 (안제2조 제4호)
- 라. 읍·면에 두는 정원을 “174”명에서 “167”명으로 조정 (안제2조 제5호)

---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272”를 “271”로 하고 제2호중 “11”을 “12”로 하며 제4호중 “34”를 “58”로하고 제5호중 “174”를 “167”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한시정원) 본청에 두는 정원중 정책보좌관 정원 1명에 대하여는 정년일 ('98. 6. 30일)을 기한으로 하고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 공로연수발령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때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양주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
1. 군본청 : 272명	1. . . . . : 271명
2. 의회사무과 : 11명	2. . . . . : 12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업소 : 34명	4. . . . . : 58명
5. 읍·면 및 그 출장소 : 174명	5. . . . . . . . . . . : 167명

## 경 기 도

우 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 / ☎(033) 249-4092 / (행) 4092, 2224 조철영

문서번호 자치 12200 - 2770

시행일자 1996. 9. (년)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시정.총무.내무과장

제목 기구·정원 승인

선결		<i>2770</i>	지시	
접	일자 시간	<i>1996. 9. 10</i>	결재	<i>부조수</i> <i>조</i>
수	번호	<i>13723</i>	재공	<i>제작</i> <i>276</i>
처	리과	<i>수무과</i>	당자	<i>313</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귀 시(군)에서 승인요청한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보강을 승인하니 빠른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정비등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기 바랍니다.

덧붙임 : 기구·정원승인서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받는곳 : 러(구리, 오산, 파주, 이천, 양주, 양평)

## 기구·정원 승인서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양주군 문화관광사업소	소 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총무계장	지방행정주사	1명	
	시설관리계장	지방건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	1명	
	관광경영계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토목주사보 지방건축주사보 지방기계서기 지방전기장 (7등급) 지방기계원 (기계8등급) 지방기계원 (영사9등급) 지방전기원 (9등급) 지방방호원 (방호9등급) 지방사무보조원 (타자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필기10등급)	1명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지방별정7급상당		1명	무대운영및공연 기획 운영요원
	소 계	17명		
	지방행정주사	△ 1명		
	지방사무보조원 (필기10등급)	△ 1명		
	소 계	△ 2명		
합 계		15명		

※ 기구·정원 시행일 : 1996년 9월 5일

※ 임용자격기준 : 무대운영 및 공연기획운영요원 (7급상당)

-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기사2급자격 취득자로서 무대장치, 공연업무분야에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o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무대장치, 공연업무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o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무대장치, 공연업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o 무대기사(별정8급상당)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 이 하 여 백 —

" 정직한 도정 잘사는 새경기 "

## 경 기 도

♀ 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1 / ☎(033) 249-4093 / (행) 4093, 2224 공재광

문서번호 자치 12200 - 2769

시행일자 1996. 9. 9. (년)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선결		二 10	지시
접	일자 시간		
수	번호	13122	재·공
처	리과	~m부	개장
담	당자	이	람

제 목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른 지적기구·인력을 따로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관계 자치법규의 개정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인력을 업무이관 부서의 인력을 자체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정원승인서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받는곳 러

## 機構·定員 承認書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원	비 고
과천시	지적과장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사무관 지방지적주사	1명 1명	
구리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무보직 6급 상계 조정
오산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시흥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군포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의왕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하남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용인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파주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이천시	부동산관리계장	지방지적주사	1명	
양주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여주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화성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광주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연천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포천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가평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양평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안성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김포군		지방건축·지적7급	1명	
	계		42명	
※ 정원시행일 : 1996년 9월 5일				

## 건축물관리업무의 지적부서이관에 따른 지적기구인력보강

### □ 기구 · 인력보강(안)

- 시 · 구 :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설치
  - 계장요원 6급 1명 신규증원, 실무인력은 자체조정
- 군(출장소) :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 개편
  - 실무인력 7급 1명 신규증원, 부족인력은 자체조정

### □ 정원조정 지침

- 시 · 구의 신설되는 「부동산관리계」는 「기구 · 정원규정 대통령령」 제5조제3항3호에 의거 최소한 1계3인(계장포함)의 정원책정을 원칙으로 함
- 군으로 건축물업무이관에 따른 읍 · 면의 자체정원 조정은 당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건축물관리 업무량이 많이 환원되는 읍 · 면이나 지역실정상 행정수요가 적은 읍 · 면의 인력을 조정
- 시 · 구본청의 정원은 건설과 · 주택과등 「건축물관련부서」에서 업무이관과 함께 인력도 조정함을 원칙
- 군(출장소)의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을 개편함에 따라 부동산관리계장의 직렬을 직무와 부합하게 조정  
(행정6급 → 행정 · 지적6급)

### □ 행정사항

- 빠른시일내에 정원조정 및 업무이관을 마무리하여 민원처리등 대민불편에 차질없도록 특별한 조치강구
- 9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 완료 시행

" 정직한 도정 잘사는 새경기 "

## 경 기 도

♀ 441-701 수원·권선·매산로3가1 / ☎(033) 249-4094 / (행) 4094, 2224 임명목

문서번호 자치 12200 - 2891

시행일자 1996. 9. 23. (년)

(경유)

받 음 양주군수

참 조 내무과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시간		
수	번호	106336	재	
처	리	과	·	공
담	당	자	람	

제 목 '96 정책보좌관 정원승인 및 정책보좌관 정원관리 철저

1. 양주 내무 12211 - 1971 ('96. 8. 22) 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승인신청한 「정책보좌관 정원」을 불임과 같이 승인하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책보좌관 정원은 정년을 존속시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운용하는 것이므로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 공로연수 발령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조치하기 바라며 (반드시 정원조례 부칙에 한시정원임을 명정한 후 정원관리), 종전에 승인된 정책보좌관 정원에 대해서도 기한의 만료 또는 결원 발생시는 즉시 감축조치하여 정책보좌관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덧붙임 :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서 1부. 끝.

경 기 도 지



# 政策補佐官 定員承認書

기관명	직급	정원	비고
양주군	지방서기관	1명	'98. 6. 30한
	합계	1명	

※ 정원시행일 : 1996년 9월 18일

- ① 본 승인정원은 본청직원임
- ② 본 정원은 정책보좌관 임용해당자의 정년일을 기한으로 한  
인적 한시정원이므로 존속기한까지만 운영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